

#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

##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78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9. 28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박완주 · 김병기  
백혜련 · 금태섭 · 권미혁  
기동민 · 송옥주 · 최인호  
윤관석 · 이춘석 · 임종성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2018년 현재, 현행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중앙자활센터 1개, 보장기관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는 광역자활센터 14개소 및 지역자활센터 249개소로 구성되어 있음.

그런데 이들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방식으로 설립되고 서

로 다른 운영주체에 의하여 운영됨에 따라 중앙과 광역·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한편,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립·자활의 지원을 위해서는 자활기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의 적극적인 실시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·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처리·기록·관리하는 정보전산망의 구축이 필요하나, 관련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,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함(안 제15조의2,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9까지 신설).

나.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광역 자활센터를 두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음(안 제15조의10).

다.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함(안 제18조의3).

라.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·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·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, 국가보훈처,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

할 수 있음(안 제18조의6 신설).

##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의2(한국자활복지개발원)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“자활복지개발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·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, 이사회, 회계,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3을 제15조의10으로 하고,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15조의10(종전의 제15조의3)을 다음과 같

이 한다.

제15조의3(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)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(이하 “자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의 개발 및 평가
2.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
3.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,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·경영 지도 및 평가
4.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·운영
5. 자활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6. 취업·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7.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,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지원
9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
10.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구축·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「사회보장기본

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.

제15조의4(임원)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,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

②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임원추천위원회”라 한다)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없다.

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.

1. 자활지원사업·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정보통신·교육훈련·경영·경제·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

⑤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, 선임,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5(직원의 파견 등)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

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15조의6(국가의 보조 등)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·양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의7(「민법」의 준용)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의8(비밀누설 등의 금지)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의9(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5조의10(광역자활센터)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·

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광역자활센터를 둔다.

1. 시·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
2. 시·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·창업 지원 및 알선
3.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
4.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
5.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·경영 지도
6.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보장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, 제15조의3”을 “자활복지개발원, 제15조의10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3제1항 중 “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”를 “위하여”로, “적립할 수 있다”를 “적립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”를 “자활복지개발원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 법인·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.

제18조의5제2항 중 “교육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”를 “교육기관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설치·운영하거나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등에”를 “교육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활복지개발원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등에”로 한다.

제2장의2에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6(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 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·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·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(이하 “통합정보전산망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, 국가보훈처,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사업자등록부
  2. 국민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보훈급여·공무원연금·군인연금·사립학교교직원연금·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, 소득정보, 가입종별, 부과액 및 수급액
  3.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
  4.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·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·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관계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·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- 제42조제3호 중 “제15조의3”을 “제15조의3, 제15조의10”으로 한다.  
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벌칙)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준비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회를 위촉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설립위원회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설립 당시의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·감사 및 원장은 제15조의4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⑥ 국가는 종전의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에 보조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앙자활센터는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② 중앙자활센터의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자활복지개발원이 포괄승계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
④ 중앙자활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자활복지개발원의 명의로 본다.

⑤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 이전에 중앙자활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중앙자활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자활복지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
⑥ 중앙자활센터의 소속 직원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일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지정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3에 따라 보장기관이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 법인등은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자활센터로 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5조의2(중앙자활센터)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사업</u></p> <p><u>2.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</u></p> <p><u>3.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,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·경영 지도 및 평가</u></p> <p><u>4.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·운영</u></p> <p><u>5. 취업·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</u></p> <p><u>6.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관리</u></p> <p><u>7.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</u></p>	<p><u>제15조의2(한국자활복지개발원)</u></p> <p><u>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“자활복지개발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u></p> <p><u>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</u></p> <p><u>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·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, 이사회, 회계,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·</u></p>

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「사회 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3(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)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(이하 “자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의 개발 및 평가
2.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
3.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

센터,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·경영 지도 및 평가

4.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·운영

5. 자활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6. 취업·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
7.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
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,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

9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

10.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

라 구축·운영되는 정보시스템  
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  
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 
및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  
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  
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5조의4(임원) ① 자활복지개발  
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 
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  
며,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  
는 비상임으로 한다.

②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  
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  
천위원회(이하 “임원추천위원회”라 한다)가 복수로 추천한  
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
임명한다.

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  
되, 연임할 수 없다.

④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
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, 제  
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  
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  
명한다.

1. 자활지원사업·사회복지 분야

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정보통신·교육훈련·경영·경제·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

⑤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, 선임,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5(직원의 파견 등)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

<신 설>

<신 설>

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15조의6(국가의 보조 등)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  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·양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5조의7(「민법」의 준용)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신 설>

제15조의8(비밀누설 등의 금지)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

## <신 설>

제15조의3(광역자활센터)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·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 지원
2. 시·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·창업 지원 및 알선

다.

제15조의9(별 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)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5조의10(광역자활센터)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광역자활센터를 둔다.

1. 시·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 지원
2. 시·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·창업 지원 및 알선
3.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
4.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
5.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

3.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
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  
육훈련 및 지원

4.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  
발·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

5.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
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 
대한 기술·경영 지도

6.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 
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
정하는 사업

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 
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 
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 
있다.

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 
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 
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  
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  
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 
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 
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  
터의 신청·지정 및 취소 절차  
와 평가, 그 밖에 운영 등에 필  
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

대한 기술·경영 지도

6.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 
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
정하는 사업

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 
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  
할 수 있다.

③ 보장기관은 제2항에 따라  
광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 
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 
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 
있다.

<p><u>정한다.</u></p> <p>제18조(자활기업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<u>제15조의2에 따른</u> <u>중앙자활센터</u>, <u>제15조의3에 따른</u>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</p> <p>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<u>제15조의2</u>에 따른 <u>중앙자활센터</u>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</p>	<p>제18조(자활기업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자활복지개발원, 제15조의10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 ① - ----- -----위하 연-----적립한다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자활복지개발원----- ----- -----.</p>
--	---

<p>이 부담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18조의4(자산형성지원) ① ~</p> <p>③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18조의5(자활의 교육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<u>교육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<u>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의4(자산형성지원) ① ~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제18조의5(자활의 교육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교육기관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설치·운영하거나-----.</u></p> <p>③ ----- -----<u>교육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활복지개발원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등에-----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의6(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</u></p>
---	---

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·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·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(이하 “통합정보전산망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, 국가보훈처,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#### 1. 사업자등록부

2. 국민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보훈급여·공무원연금·군인연금·사립학교교직원연금·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, 소득정보,

가입종별, 부과액 및 수급액

3.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

4.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·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·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관계 전산망 또는 자료의

	<u>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·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</u>
제42조(보장비용) 이 법에서 “보장비용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	제42조(보장비용)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8조, 제11조, 제12조, 제12조의3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5조의2, <u>제15조의3</u>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	3. ----- ----- ----- <u>제15조의3, 제15조의10</u> ----- ----- -----
4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4. (현행과 같음) <u>제49조의2(별칙)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